

참고1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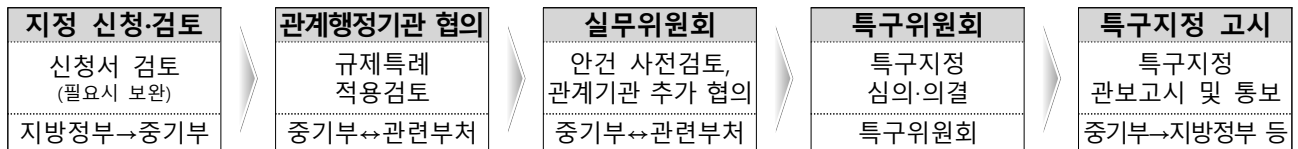
□ 배경 및 절차

- (배경) 지역 균형발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 허용 구역을 지정 (지역특구법, '04~)

*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절차) 기초지방정부(시·군·구)가 특화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 → 부처협의 및 특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역특구 지정절차 >



□ 규제특례 현황

- 「지역특구법」 상 총 130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해당 지방정부의 특화특구계획에 포함된 특례를 특구 내 적용 가능

< 주요 내용 >

구분	적용 특례	구분	적용 특례
일반 (71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임대·사용대차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5개)	사군구립학교 교장·교원 임용권한 이양
	외국인 교원 및 강사 임용		등록체육시설업 등록권한 이양

□ 지정 현황 : 현재 171개 특구*(135개 시군구)가 지정·운영 중('26. 8. 기준)

* 제60차 위원회 의결사항은 '26년 8월 중 지정·해제 고시 후 반영